메리츠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내 가족을 위한 <mark>행복 드라이브</mark>의 시작*!*



Ready Meritz! Merry Meritz!



고객콜센터 사고접수센터 1566-4982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 ·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 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 휴 · 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 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 · 부가서비스 및 신상품 · 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 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ㆍ제공한 경우 이용ㆍ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 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전화번호): 1566-7711 홈페이지: http://www.meritz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 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 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 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마케팅 목적의 동의철화는 즉시 가능합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 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 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에 시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 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전화: 02-708-1000. 홈페이지: http://www.allcredit.co.kr

• NICE평가정보(주)

- 전화: 02-1588-2486. 홈페이지: http://www.credit.co.kr

바.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따라 보험거래종료 후 5년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시용정보를 삭제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 보험거래종료일은 1) 보험계약 만기, 해지, 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및 2) 보험 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일, 채권·채무관계 소멸일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 를 기주으로 판단합니다.
- * 다만, 만기 등 사유발생일 이후라도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진행중이거나 수사·소 송이 진행중인 경우 거래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전화(전화번호): 1566-7711 홈페이지:http://www.meritzfire.com

(3)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고객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인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개인신용정보담당자: 02-3786-2555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금융민원센터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메리츠금융그룹 고객정보 취급방침

메리츠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 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메리츠금융그룹은 메리츠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l.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성 별, 국적 및 직업 등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 레(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 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개인의 직업 \cdot 재산 \cdot 채 무 \cdot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 마. 그 밖에 정보 : 법원 또는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정보, 조세 또는 공공요금 등의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등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Ⅱ. 고객정보의 제공처

메리츠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 사는 메리츠금융지주회사,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메리츠자산운용, 메 리츠대체투자운용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메리츠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 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치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 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 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 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 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단, 금융지주회사감동규정에서 정한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사항은 제외)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 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⑧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 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 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 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이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0, 3, 31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화재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증권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대체투자운용
 고객정보관리인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목차

	자동차보험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 1
	쉽게 이해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요약서~~~~~	5
	보험 용어 해설	23
	약관 인용 법령 요약	25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	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37
·	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	
·	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11 11
·	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11 11 41 41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44
제1절 자기신체사고 44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46
제3절 자기차량손해 47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51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51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53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55
제4편 일반사항 57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57
제2장 보험계약의 병동 및 보험료의 환급 51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61
제4장 그 밖의 사항 65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67 (별표2) 대물배상 지급 기준 79 (별표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82 (별표4) 과실상계 등 83 (별표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84 (부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84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목 차-

1. 운전자 범위 및 연령관련 특별약관	105
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4) 가족 및 형제ㆍ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5)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6) 임시운전자 지정일 확대 특별약관 1-7) 임시운전자 식시간 확대 특별약관 1-8)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1-9~1-17) 운전자연령 만 21 · 22 · 24 · 26 · 28 · 30 · 35 · 43 ·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105 · 106 · 107 · 108 · 109 · 109 · 110
2.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	113
2-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2-2)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2-3)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실손형) 2-4)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실손형) 2-5)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 114 · 117 · 118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관련 특별약관	121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관련 특별약관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3-2) 주말ㆍ휴일확대담보 특별약관 3-3) 대중교통사고담보 특별약관 3-4) 해외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3-5) 간병비지원금 특별약관 3-6) 성형 및 치이보철지원금 특별약관 3-7) 교통상해 입원 및 상급병실료 차액 지원금 특별약관 3-8) 자녀 사고 보상 특별약관 3-9) 스쿨존 내자녀 사고 보상 특별약관 3-10) 유산위험 사고 보상 특별약관 3-11) 여성중대사고 보상 특별약관 3-12) 출퇴근 사고 보상 특별약관	· 121 · 122 · 123 · 124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1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1 · 132

5. 자기차량손해담보 관련 특별약관·····	136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	136
5-2)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37
5-3) (Auto Lease)중도 상환 수수료 보상 특별약관 ····	
5-4)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5-5)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5-6) 치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5-7) 차량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5-8) Eco-Green 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5-10)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	
5-11)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5-12)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	146
3 1 <i>0</i> 간/사이자 메디터 간러가고 포히 독급되면	140
6.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	147
6-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47
6-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48
6-3) 보험계약 갱신약정 특별약관 ······	
6-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6-5) 보험료 정산약정에 대한 특별약관	
6-6) E-mail 안내약정 특별약관 ·····	150
6-7) 행복나눔 서민우대 할인 특별약관॥	151
6-8)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	153
6-9)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155
7 71C EHOD	457
7. 기타 특별약관 ·····	157
7-1)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157
7-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	162
7-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167
7-4)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70
7-5)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7-6) 자동치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7-7)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172
7-8)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7-9) 주행거리 연동 할인 특별약관 ·····	176 180
7-9) 구행거리 언동 일인 특별약관	183
7-10) 자정대리 청구 특별약관	186
7-17/ 시장에서 경기 독일하면 7-12) 블랙박스 장치 할인 특별약관 ·······	188
7-13) 자녀(만7세이하) 할인 특별약관·····	189
7-14)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7-15) 전방충돌 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	
7-16) UBI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	192
7-17) 후측방충돌 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	193
7-18) 어라운드 뷰 모니터 할인 특별약관 ·····	195
7-19) 헤드업 디스플레이 할인 특별약관 ·····	196

자동차보험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 드북**

※ 이 Quide Book은 보험약관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약관 주요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 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북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 요 약한 약관
보험약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통약관 자동차보험의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 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 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보통약관 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 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인배상	제3조	p. 41	
① 보상하는 손해	대인॥·대물배상	제6조	p. 41	
	자기신체사고	제12조	p. 44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상하는 손해도 반드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제17조	p. 46	
시 확인 할 필요	자기차량손해 ※ 차대차 · 단독 사 고 설명 필요	제21조	p. 47	
	대인배상 I	제5조	p. 41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II·대물배상	제8조	p. 42	
	자기신체사고	제14조	p. 44	
*본인이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가입특약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무보험자동차에 의 한 상해	제19조	p. 46	
반드시 확인 할 필요	자기차량손해 ※ 차대차 · 단독 사 고 설명 필요	제23조	p. 48	
③ 청약 철회	제41조(청약 철회)		p. 58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p. 59	
(5) 계약 후 알릴 의무 제45조(계약 후		의무)	p. 60	
⑥ 사고발생 시 의무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p. 60	

⑦ 보험계약의 취소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p. 62	
⑧ 보험계약자의 보험 계약 해지·해제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	p. 63	
③ 보험회사의 보험계 약 해지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p. 63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5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 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요약서 p. 5
②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용어의 정의, 약관본문 내 용어설명 및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제1조(용어의 정의) p. 37
③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 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QR코드 p. 2
④ '관련법규' 항목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p. 25
⑤ 약관조항 등이 음영 · 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yk,co.kr), 고객 콜센터(1588-1018)로 문의 기능
-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탈(FINE, 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업제 이해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요약서

- ※ 이 요약서는 그림, 도표, 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 보험 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보험

1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입니다.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대인배상 | (최대 1억 5천만원) + 대물배상(2천만원)

2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 ▷ 의무보험 미가입 상황에서 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구분	대인배상 I	대물배상		
10일이내	1만원	5천원		
초과1일당	4천원	2천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주) 위 지연기간별 과태료는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입니다.

※ (예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50일 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 대인배상 I : 1만원 + (4천원 x 40일)

= 17만원

- 대물배상: 5천원 + (2천원 x 40일)

= 8만 5천원

☞ 합계: 25만 5천원

2.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자 유의사항

청약하신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나요?

- ▷ 피보험자의 성명, 주소, 연령, 연락처 등 보험가입자 정보에 관한 사항
- ▷ 차량번호, 차명, 배기량 및 추가 장착 부속품 등 차량에 관한 사항
- ▷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
- ▷ 보장 내용 및 가입금액에 관한 사항
- ▷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관한 사항
- ▷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2

- ※ 만약 가입하고자 하는 내용과 청약하신 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 담당자 또 는 고객 콜센터(1566-7711)로 연락주시어 계약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자핔서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단,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 녹취, 공인인증 등의 방식을 포함합니다.)

청약하신 보험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나요?

- ▷ 다른 보험회사 가입된 동일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사항
- ▷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에 관한 사항
- ▷ 청약서 기재사항 또는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등
 - ※ 보험가입시 청약 내용은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 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받 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 변경 시'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나요?

- ▷ 새차 및 중고차 구입으로 차량 변경시
- ▷ 운전자 연령 또는 운전자 범위 변경시
- ▷ 자동차 정비 구입 또는 부속품 교체시
- ▷ 이사로 인한 주소지 변경시
- ▷ 새로운 차량번호 변경시

※ 보험기간 중 계약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계약 담당자 또는 고객 콜센터 (1566-7711)로 지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 1.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형제·자매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받 지 못했습니다.
 - ▷ 형제 · 자매는 가족한정 특약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 · 자매까지 유전자 범위에 포함되도록 보험계약을 변경하셔야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자동차 사고로 네비게이션 등 부속품이 파손되었으나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 ▷ 네비게이션 등 차량에 새로운 부속품을 장착한 경우, 사고발생 전 보험사에 부속품 종류와 가액을 알려 계약내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부속가액 포함시 보험료는 변 동되며 사고시 해당 부속품까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부속품에 대한 정보 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 만료 시'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만료(종료) 전 안내

▷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고객님께 보험계약 만기(종료) 전 2회에 걸쳐 일반 우편 또는 I MS(무자)로 만기안내를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안내시기 안내방법		안내내용
1차안내	만기일 75일~30일 전	우편 또는 LMS(문자) 발송	만기일자
2차안내	만기일 30일~10일 전	우편 발송	만기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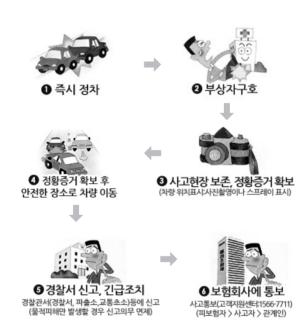
- ※ 보험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 자료록 F-mail로 안내해드리는 'F-mail 안내약정 특별약관'을 가인하 신 경우, 만기안내를 E-mail로 안내해드립니다.

주행거리 연동 할인 특별약관 정산 2

- ▷ 보험기간 내 연환산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 ※ 최초 주행거리 사진 등록 유효기간
 - : 보험계약 개시일 45일 전 ~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 ※ 최종 주행거리 사진 등록 유효기간
 - : 보험계약 만료일 45일 전 ~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
 - ※ 연 환산 주행거리 산출 예시
 - 보험기간: 2021,10,01, ~ 2022,10,01
 - 최초 사진 송부: 2021.09.20. / 최초 주행거리: 3.000km
 - 최종 사진 송부: 2022.09.15. / 최종 주행거리: 10.200km
 - 일평균 주행거리
 - = (10,200km . 3,000km) ÷ 360일 (2022,09.15. 2021,09.20.)
 - = 20km
 - 연 화산 주행거리
 - = 20km ×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
 - = 7,300km 🖙 10,000km 이하 정산율 적용

5.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입자 유의사항

사고 발생시 운전자 대처방법



※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에 통보할 내용

- ①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차량번호
- ② 사고일자 및 장소, 사고내용, 피해사항
- ③ 경찰서 신고여부, 입원병원, 정비공장 등

※ 피해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

먼저 보험회사로 사고접수를 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보상직원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정금액을 주고 현장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인정기준 에 따라 적용됩니다. 또한 사고의 세부 내용에 따라 수정요소들을 가 감하여 과실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보험의 기본 구성

▷ 자동차보험은 기본 보장 내용인 보통약관과 고객님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통약관



	사람이 다친 경우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배상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고객님에 대한 보상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 보장 확대 특별약관
 - :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등
- 보험료 할인형 특별약관
 - : 주행거리 연동 할인 특별약관, 블랙박스 장치 할인 특별약관 등
- 기타(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등)

7.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

대인배상 | . 대인배상||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헌근이 종르 및 하도

7 H	보상한도(피해자 1인당)			
구분	대인배상	대인배상Ⅱ		
사망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대인배상 I 을 초과하는 손해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소파이는 돈에		
보험금의 종류	사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부상: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후유장애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 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사망 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인배상 !! (가입금액: 무한) 가입을 통해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 2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구분	내용				
보험금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견인비용				
가입금액	2/5천만원 또는 1/2/3/5/10/20억원 中 선택				

※ 대물배상 가입금액 2천만원까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반 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유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7 H	가입금액				
구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사망/ 후유장애	1천5백만/3천만/5천만/1억원 中 선택	1억/2억/3억/5억/7억원 中 선택			
부상	1천5백만/3천만/5천만원 中 선택	1억/3천만/5천만/1억/2억원 中 선택			

※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 부상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보상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상범위 사례 〉

-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상해급수 12등급 부상으로 치료비 300만원발생한 경우
 - ① 자기신체사고 가입(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5천만원)
 - ②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5천만원)

	구분	① 자기신체사고	② 자동차상해 특약		
.!	보상하는 손해	실제 발생한 치료비 지급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손해액 지급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등)		
	치료비	200만원 (12급 보상한도)	300만원		
	위자료	보상안함	15만원 (12급 부상 위자료)		
	휴업손해	보상안함	170만원 (30일 입원으로 휴업기간에 발생한 수입 감소액 200만원시, 200만원 x 85%)		
	합계	총 200만원	총 485만원		

주) 위 사례는 예시로써, 가입금액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으로 인 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 자기차량손해만 가입된 경우 자기차량의 단독 사고 또는 가해자 불명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보호받 으시기 바랍니다
 - * 자기차량의 단독사고: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손해 또 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자기부담금 종류

-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 (※ 보험증권에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기재)

7H	자기부담금				
구분	손해액의 20%	손해액의 30%			
최소	5/10/15/ 20/30만원	30/50만원			

주) 최소 자기부담금 5/10/15/20만원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기부담금 예시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자기차량손해액의 20% 가입, 최소/최대 자 기부담금 20만원~50만원 한도 적용

손해액	손해액의 20%	최소/최대 한도 해당 여부	최종 자기부담금
150만원	30만원	20만원~50만원 위치	30만원
500만원	100만원	50만원보다 큼	50만원(최대한도)

▷ 보상하는 손해

-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 상 (처량 탑승 여부와 무관)
 - ※ 무보험자동차란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사고 후 도주) 차량인 경우 등 을 말합니다

▷ 보험금의 한도

구분	내용
가입금액	2/3/5억원 中 선택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1

보상하지 않는 손해(주요내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통약관 본문 내용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딤	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인비	배상ㅣ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기 타 담 보	공통적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단,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		
	대인॥	피보험자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생긴 손해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 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 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담	·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대물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비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
	자기신체 사고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미지급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기 타 담 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미지급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인 경우
	자기차량 손해	피보험자동치에 생긴 흥,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 모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치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 난으로 인한 손해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피보험자동치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치가 주정치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안내

▷ 음주 · 무면허 · 마약 · 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보험자는 일정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구분	대인	배상	대물배상		
十世	대인 I	대인॥	의무보험	의무초과	
음주					
무면허	한도 내 지급보험금	40101	한도 내	r-tinioi	
뺑소니		1억원	지급보험금	5천만원	
마약 · 약물운전					

8.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

▷ 각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 가능자가 달라집니다. 아래 운전 가 능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배상 1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본인	배우자	부모·자녀 (며느리·사위)	배우자의 부모	형제 · 자매	지정1인
기명1인	0	×	×	×	×	×
기명1인 + 지정1인	0	×	×	×	×	0
부부	0	0	×	×	×	×
가족	0	0	0	0	×	×
가족 + 형제 · 자매	0	0	0	0	0	×
미가입	0	0	0	0	0	0

2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 운전자 연령을 만21세. 만22세. 만24세. 만26세. 만28세. 만30세. 만35세. 만43세. 만 48세 이상으로 한정합니다. 해당 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한 경우 대인배상 I을 제 외한 담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은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만 연령 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 할인형 특별약관 3

▷ 각 보험료 할인형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주행거리 연동 할인	보험계약 체결 시 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한 경
특별약관	우 이를 준수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환급
블랙박스 장치 할인 특별약관	차량용 블랙박스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보험료 할인
자녀(만7세 이하)	만7세 이하 혹은 출생 전 자녀(태아)가 있고, 부부운전자 또는 기
할인 특별약관	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할인
차선이탈 경고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LDWS) 또는 차선유지보조장치(LKAS)를 부착
할인 특별약관	한 경우 보험료 할인

▷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 법률비용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약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상하는 손해	보상한도					
			구분	실속형	기	본형	고급형
형사합의	대인사고로 인하	Г	사망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
지원금	여 공소제기된 경		1급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특별약관	우 피보험자가 지 급한 합의금 또는		2~3급	4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실손형)	실제 공탁금액		4~7급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8~14급	100만원	250	0만원	500만원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 (실손형)	대인사고로 인하 여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피 보험자가 부담하 는 벌금	((단, 스쿨존	2천 &피해자연량 3천[병 만1	3세 이	하 사고 시
변호사선임비	대인사고로 인하						
용 지원 특별	여 발생한 변호사		구분	실속형		フ	본형
약관 (실손형)	보수비용 등으로 소요된 금액		사망	300만원	į	50	0만원

▷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특별약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 자동차 운행이 불기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0km 한도로 가까 운 정비소로 견인
비상급유	• 연료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 1회에 한하 여 휘발유 또는 경유 3리터 한도로 급유
잠금장치 해제	• 자동차 열쇠 분실 등으로 운전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 금장치 해제 서비스 제공 (※ 단, 트렁크 잠금장치 제외, 외제차 또는 특수 잠금장치, 사이드 에어 백 장착 차량 등 제외)
배터리충전	•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
긴급구난	•도로 이탈,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구 난 서비스 제공
타이어펑크 수리	• 지면에 닿는 타이어 트레드 부분(접지면)에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 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펑크 1개 부위에 한하여 수리
정기검사 대행	• 정기검사대행을 요구할 경우 정기검사 대행 (※ 단, 검사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폐차대행	• 폐차대행을 요구할 경우 폐차장까지 견인

- ※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험기간에 따라 이용가능횟수가 달라집니다.
- * 긴급출동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시점 자동차의 형태 또는 사고발생지역(섬 또는 산간 등)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긴급출동, 비상급유 등 약관에 따른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경우 초과 시 고객님의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예) 긴급견인 10km 초과 시 부담금 발생 비상급유 2회 초과 시 부담금 발생 등

9 자주하는 질문

Q. 보험기간 중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A. 고객님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임의담보에 대해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 험에 대해서는 약관에 정해진 「의무보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 능합니다
 -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담보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보험료가 지 급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입니다.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하 지 않을 계획인데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나요?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 면제 사유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업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등 로증과 번호판을 관청에 영치하면 보험 가인이 면제 된 수 있습니다.

Q 운전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특정기간 동안 운전가능 범위 외의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할 경우 계약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66-7711)로 연락하시어 「임시운전자 특별약관 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 만 운전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보험료가 발생됩니다.

Q. 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산정합니다.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차량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해 산정됩니다.

Q. 동일증권이란 무엇인가요?

- A. 2대 이상의 차량(개인용 전차종, 업무용 개인소유 소형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 당 차량들의 보험종기를 일치시켜 동일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 만기일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개별 할인할증 등급 산정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 ※ 업무용 개인소유 소형차종이란, 업무용 개인소유 화물4종·경화물·경승합을 말 합니다.

Q.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나요?

A 사고발생 시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및 사고건수별 상대도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인 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인 사고여도 사고건수별 상대도 의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내용(부상급수 및 물적사고 손해액)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여 변 동되는 요율입니다.

▷ 사고건수볔 상대도

사고발생 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육입니다

Q.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나요?

A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예) 무면허운전,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Q. 직전 3년간 사고가 없고 교통법규를 준수했습니다.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나요?

A 3년간 무사고자·교통법규 준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 동차보험은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사고가 없을지라도, 본인이 속한 계층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나, 큰 규모의 사고가 난 경우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보험 용어 해설

1 보험 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2.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 부하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동차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5 피보험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보험금 청구권자

6 보험료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 1) 순보험료 :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납입하 는 보험료
- 2) 부가보험료: 수수료 인건비, 기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

7. 보험금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관리하는 동안 자동차 사고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

10. 면책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나. 특정의 사안은 예외로 하여 그 의무를 면함

11. 자기부담금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 보험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12. 공제계약

일정한 지역이나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상호부금을 갹출해 두었다가 조합원 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급을 지급하는 제도, 자동차보 험과 관련된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버스공제조한, 전세버스공제조한, 택시공제조한, 개인택시공제조한, 화물공제조합이 있음.

약관 인용 법령 요약

다음은 보통약관에서 인용된 주요 법령을 간략히 요약한 내용입니다. 약관의 이해를 돕 기 위한 내용으로만 참고하시고, 세부내용은 약관 및 법령 전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 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15조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2호 · 제3호에 따라 개인정 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 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 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화 · 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항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 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 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 148조 및 156 조 제 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 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치를 우전한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혈중알코옼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 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 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 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 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 · 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 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세분한다.

-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 · 직행좌석형 ·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 행형태를 구분한다.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 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 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 ·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

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유행형태를 구분하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기.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웬(「산업디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등"이라 한다) 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등의 입주기업체 소속원을 포함한다]만의 통근 ·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 연구기관 등 공법인
 -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채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 기관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 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 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 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 액으로 한다
- ④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 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이하 "보험금 지급한도"라 한 다)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적용한다
 -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경우: 가입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에 대하여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되.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등 채권(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따른 예금등 채권은 제외한다)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 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합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을 증명한 경우
-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 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 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 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건설기계관리법」 및「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 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 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 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판을 시· 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 · 품질 인증 등)

-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다
- ② (삭제)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
 -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 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 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 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를 말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다
 - 5.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휘발유 · 경유 · 액화석유가스 · 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 는 자동차를 말한다.





메리츠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

2025-08-01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은 다음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목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37
제1조(용어의 정의)3(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3(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41
제1장 배상책임 4:
제1절 대인배상 I 4: 제3조(보상하는 손해) 4: 4: 4: 4: 4: 4: 4: 4: 4: 4: 4: 4: 4:
제4조(피보험자) 4'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4'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4:
제6조(보상하는 손해) 4 제7조(피보험자) 4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42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4(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4.4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4
제1절 자기신체사고44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3조(피보험자) 44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4년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4년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46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제18조(피보험자) 46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절 자기차량손해	47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제22조(피보험자)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49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51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51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51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51
제27조(제출 서류)	52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52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53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53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31조(제출 서류)	54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54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55
제33조(보험금의 분담)	55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55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56
제37조(공탁금의 대출)	56
제4편 일반사항	57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57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57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58
제41조(청약의 철회)	58
제42조(보험기간)	59
제43조(사고발생지역)	59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59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60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60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61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61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61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61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62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66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 62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62 제53조(보험계약 보험계약 해지) 63 제54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63
제4장 그 밖의 사항 65
제55조(약관의 해석) 66 제55조(약관의 해석) 에 66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66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66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66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66 제60조(분쟁의 조정) 66 제61조(관할법원) 66 제62조(준용규정) 66
〈별표 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67 〈별표 2〉대물배상 지급 기준 76 〈별표 3〉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86 〈별표 4〉과실상계 등 85 〈별표 5〉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86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84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 주햇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 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 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 에 했정안전부력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삼황이거나 우전(조종)이 금지된 삼황에서 우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처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 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또는 공제 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 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 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 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 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2) 장비: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

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하이패스 단말기)
-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 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 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 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치순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 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재(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 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치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¹⁾ 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을 말합니다.[™]
 - (*1)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한 일

반의류는 제외)

- (*2)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 리학 수 없는 상태
- (*3)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 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 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17. 물체 :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 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 우 묵체로 보지 않습니다
- 18.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 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19 과실 :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합니다.
- 20. 중대한 과실: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현저히 결여한 때를 말합니다.
- 21.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장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유불명(뺑소 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 는 사회보장제도록 막한니다
- 22. 상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 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3. 배상의무자 :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 24. 전기자동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 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제2 조 제3호와 제6호에서 이르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25.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6.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 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 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27.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 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 1.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 차보유자는 「대인배상 」」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2. 임의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 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ㅣ」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 동치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나. 「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사'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	기본	×	특약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료		보험료		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특별 요율	×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 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 는 요율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자동차보험료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보험회사별로 일부 상이합니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2-1-1

제1절 대인배상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집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자를 「대인배상 1 '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친족피보험자
- 3. 승낙피보험자
- 4. 사용피보험자
-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 []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 II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 상 소해배상책임을 집으로써 입은 소해(「대인배상」 에서 보상하는 소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 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 「대인배상 !! 요 「대물배상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친족피보험자
-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 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가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기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지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 어난 손해
 -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 해. 다만, 운전면하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 상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 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 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 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 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

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 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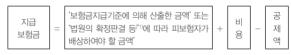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 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 습니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대인배상 」,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 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대인배상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 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기급조치비용을 포함)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2)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 를 밟아야하며, 이때에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증 거(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 소송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 · 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 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 · 약 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 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한도 내 지급보험금
- 2, 「대인배상॥」: 1사고당 1억원
- 3.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모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2)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 경우,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 차의 구동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감전, 화재 또는 폭발 사고는 피보험 자의 피보험자동차 탑승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 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 2-2-1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 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 · 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 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 · 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 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 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부상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 에 기재된 부상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 가 남은 때에는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 기준'의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 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 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 생하지 않는 경우(*1)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실제손해액'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따 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대인배상 |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 || 」에 의해 보상받 을 수 있는 금액
 - 2.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⑤ 다만, 제4항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1)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 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⑥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약관에 기재된 공제액이 없는 경우로 피보험자의 단독사고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금액인 '비용'은 '공제액'이 있는 사 고 시에만 지급됩니다.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약관상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상관없음)
-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상 관업음)
-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 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가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치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치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 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

-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소해는 보상합니다
-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 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2-2-2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2-3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 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 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2.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3.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 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5.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 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 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3)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1)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합니다.
 -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단, 다른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와 영상기록장치 등으로 다른 자동차와의 사 교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다른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 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및 농업기 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 차는 제외한니다
 -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 (*2)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 하 소사
- (*3)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가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치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 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ㆍ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 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ㆍ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 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 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11. 피보험자동치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하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48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 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 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 약물운전 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 를 범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소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소해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 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 1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 합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 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 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1)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중요한 부분(*3)을 새 부분 품으로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 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 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합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 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비용
- ④ 제1항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4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 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가 아닌 경우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 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의 「자 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 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이 금액을 상대방 또는 상대 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보험회사는 먼저 지급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 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손 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

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먼저 지급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 대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 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기재

된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자기 피보험자가 실제 손해액에서 해당 구상금을 제외 이미 부담한 자기 부담금 =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 차액 부담금

- ⑥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⑦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3)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 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소해⁽³⁾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 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 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 (*1)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 을 때에는 사고박생 당시 보험개박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 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 받은 부품을 사 용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 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3)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 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 (*4)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 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3.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 은 때
4. 「자기치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 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 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 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 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 । 」, 「대인배상 !!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 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 손해」
1. 보험금 청구서	0	0	0	0	0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0	0	0	0	0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 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 사고사실확인원				0	0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 칭, 차량번호				0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 또는 공 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0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 대인배상』」 또는 공제계약, 배상 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 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0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 실증명서					0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0			0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0			0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 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 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 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 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 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 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 하게 됩니다.)	0	0	0	0	0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52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 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 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축 3-2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 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 고에 관하여 거절할 수 있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 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 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 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 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②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I・Ⅱ」	「대물배상」
1. 교통사고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0
2. 손해배상청구서	0	0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건적서, 사진 등, 이 경 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 발급 등 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 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 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0	0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 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 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 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대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 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 · || 「대물배상」「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 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 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 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 에 따라 부담하여 지급합니다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 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 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 리름 취득합니다
 - 2 「자기차량손해 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 안에 사고를 낸 경우
 -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 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 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 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 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 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어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 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또는 '보 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 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 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 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1)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이어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 사이버물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 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림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 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³⁾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 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2)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3)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 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 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ㆍ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ㆍ사진ㆍ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단, 만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45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 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 회할 수 없습니다.
 -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 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 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 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 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 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보험회사가 제4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명 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기간
1. 원칙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을 유예할 경우 보험회사가 유예를 승인한 날부터 운행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만큼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을 연장합니다.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¹⁾ 및 의무보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 헌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 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 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계약 후 알맄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 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신청 이후 유예기간의 원인 사실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기가 유예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 · 퇴근 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0t 하니다
 -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현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 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
 -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 · 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 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 의 양도)에 따릅니다
 -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 ·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4-3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 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 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 차를 '산 사람'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 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 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 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 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 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 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 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 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 에 상실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 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 학원 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 동차는 제외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보험계약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포함하고 있고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366)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 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 해제)

-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 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 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

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 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 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 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 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지와 해제〉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향해 계약효력을 상실시키는 의사표시이며, 해제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별도 의사표시 없이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 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 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

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 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 과하 때
-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미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미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 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 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 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윸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 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 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 를 말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 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 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 발생 시 의무)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 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 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 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 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 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 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 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하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기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관합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 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_{
m J}$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 수익액	7.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교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교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 식) (월평교현실소득액-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1) 유지자(기) 산정대상기간(1)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휴가보상금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것은 과거 1년간으로함. (2)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타당한 기간으로함. (나) 산정방법(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수 있는 자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소득을 산정할수 있는 자에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함. 가)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 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항목 지금 기주

③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 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 사업 개 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 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 체된 경우는 제외합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 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 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_ 〈산 싀〉 -

3. 상실 수익액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 비를 공제함.
 -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 5.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로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 6. 기준경비율: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적용 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
 - 7. 단순경비율 : 매출 대비 경비를 단순하게 계산하기 위해 수입액 에 곱하는 적용률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 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 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 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 수익액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상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 / 2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 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중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중

명한 경우에 한함.

항목	지급 기준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	
	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상실 수익액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 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합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원으로 사제함	

능월수를 산정함.

항목	지급 기준
	〈용어풀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 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12호 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 는 염전에서 비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실 수익액	[통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 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입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 2. "지정통계"란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통계를 말한다. 3.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으로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6. "통계종사자"란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행정자료"란 통계자성를 제외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

성 \cdot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cdot 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 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 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기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항목	지급 기준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기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3. 상실 수익액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 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7) 적법한 일시체류자 ^{**)} 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이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 ^{**2} 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지원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이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i = 5/12%, n = 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은 「자동 치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 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 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 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 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 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 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 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 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배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 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의 임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만원)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 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선 식) 1일 수입감소액 ×휴업일수 × <u>85</u> 100
3, 휴업손해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기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동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다. 수입감소액의 산정(1) 유직자(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감소액의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실제의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시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 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 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 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 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항목	지급 2	· 준
		신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음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4. 간병비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 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 는 서류를 말함.	
	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지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 준으로 지급함.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실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 I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업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 네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hp		이에답을 보증한도 데에서 서답다.
항목		기군
1. 위 자 료	지급 기준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에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에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에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에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후유장에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후유장에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등력상실률 × 85% (*1) 후유장에 판정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에 판정 당시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에 판정 당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에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27% 이상 35% 미만 20% 이상 27%미만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400 240 200 160 120 100 80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I 애 위자료로 지급함.	: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
2. 상실수익액		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 상실일부터 취업기능연한까지 월수 2 240을 한도로 함) 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부터 취업기능연한까지의 월수에
	(가) 산정대상기간	

항목	지급 기준
2. 상실수익액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 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시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에 평가방법에 따라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3. 가정 간호비	기: 인정 대상 지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에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 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자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리)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이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비)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 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 에 모두 해당되는 자

항목	지급 기준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
	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
3. 가정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
간호비	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
	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
	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7.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 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 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 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 품을 말합니다.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기. 대상 비사업용자동채(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치를 하는 경우 (7) 대여자동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 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¹⁾ 의 대여자동차 중 최 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²⁾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 ⁽²⁾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 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항목	지급 기준
3.	대 차 료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채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 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증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채로 일라표 범위에서 실임차로,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채(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치를 하지 않는 경우 (가) 통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의 (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가) 우리가는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다한,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병위)를 말합니다.
4.	휴 차 료	기.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항목	지급 기준
4. 휴 차 료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5, 영업손실	기.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함. 그러나합의지면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
6.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채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7.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 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 3〉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보험가입금액				
등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800만원	1,100만원	1,600만원	2,700만원	5,300만원
3급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4급	700만원	900만원	1,400만원	2,300만원	4,700만원
5급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700만원	3,300만원
6급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300만원	2,700만원
7급	250만원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1,700만원
8급	180만원	240만원	360만원	600만원	1,200만원
9급	140만원	190만원	280만원	470만원	930만원
10급	120만원	160만원	240만원	400만원	800만원
11급	120만원	130만원	200만원	330만원	670만원
12급	120만원	130만원	180만원	200만원	400만원
13급	80만원	100만원	130만원	200만원	270만원
14급	50만원	70만원	80만원	130만원	13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보험가입금액				
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I」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I」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II」 또는 '두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처랑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구할 수 있음. (*1) '차랑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과실비율의 적용기준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기: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치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 ~ 20%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급이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성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철주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달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 14. 라타부 안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박에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 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5백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2급	1천5백 만원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천2백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흥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미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끌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주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주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 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 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 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 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4급	1천만원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시행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성,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 파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 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 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 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상해	한도금액	상해 내용
급별	인도금액	
5급	900만원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가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컨,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성(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홍관 섭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6급	700만원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착골 주두부 골절 20. 착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해 29. 무족기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원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 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7급	500 만원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황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구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8급	300 만원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11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녹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홍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홍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건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양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 내용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소 수족지 관절 염좌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 역	내 용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공통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 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 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 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 의 등급을 적용한다.

영 역	내 용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 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 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
	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두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 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흉 · 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시 인정한다.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 인 경우로 정한다.
척추	착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착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 급에 준용한다.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상 · · 공통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 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하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측 또는 단촉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영 역		내 용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 한 등급을 준용한다.
	공통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 급을 적용한다.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 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상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하	상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지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향에 적용한다.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 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 용한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 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당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 우 12급을 적용한다.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영 역		내 용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하지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 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상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하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지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 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 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 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5천 만원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모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산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용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반산불수가 된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막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모름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모름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억3천 500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
3급	1억2천 만원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 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용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두 소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1억5백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t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5급	9천만원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천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소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모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말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천500 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8급	4천500 만원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천8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천700 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0급	2천700 만원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천300 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까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까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동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로로 못쓰게 된 사람 10. 홍복부 장기의 가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찰을 한 사람		
12급	1천900 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 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모양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3급	1천5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6.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 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100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점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점 또는 제1지관점(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 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 태를 말한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 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 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 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 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 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 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 는 사람을 말하다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 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 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 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 를 말하다
-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 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 우를 말한다.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 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목 차-

1. i	운전자 범위 및 연령관련 특별약관	105
	, , , , , , , , , , , , , , , , , , , ,	107 108 109 109 110
2. I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	113
	2-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2-2)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2-3)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실손형) 2-4)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실손형) 2-5)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114 117 118
3. 7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관련 특별약관 ·····	121
3. 7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관련 특별약관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3-2) 주말ㆍ휴일확대담보 특별약관 3-3) 대중교통사고담보 특별약관 3-4) 해외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3-5) 간병비지원금 특별약관 3-6) 성형 및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3-7) 교통상해 입원 및 상급병실료 차액 지원금 특별약관 3-8) 자녀 사고 보상 특별약관 3-9) 스쿨존 내자녀 사고 보상 특별약관 3-10) 유산위험 사고 보상 특별약관 3-11) 여성중대사고 보상 특별약관 3-12) 출퇴근 사고 보상 특별약관	121 122 123 124 124 125 126 127 128 129 131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21 122 123 124 124 125 126 127 128 129 131 132

5. 자기차량손해담보 관련 특별약관·····	136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	136
5-2)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137
5-3) (Auto Lease)중도 상환 수수료 보상 특별약관 ····	
5-4)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5-5)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5-6) 치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5-7) 차량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5-8) Eco-Green 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5-10)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	
5-10) 시구시작 덴니가 이용 중 시청손에 담모 흑월작전	
5-12)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	146
3 1 <i>0</i> 간/사이자 메디디 간러가고 포히 독급되면	140
6.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	147
6-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47
6-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48
6-3) 보험계약 갱신약정 특별약관 ······	
6-4)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6-5) 보험료 정산약정에 대한 특별약관	
6-6) E-mail 안내약정 특별약관 ·····	150
6-7) 행복나눔 서민우대 할인 특별약관॥	151
6-8)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	153
6-9)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155
7 71CI EHIODI	457
7. 기타 특별약관 ·····	157
7-1)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	157
7-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	162
7-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167
7-4)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70
7-5)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7-6) 자동치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7-7)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172
7-8)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7-9) 주행거리 연동 할인 특별약관 ·····	176 180
7-9) 구행거리 언동 일인 특별약관	183
7-10) 구정기다 건강 물건 !! 목글국건 ************************************	186
7-17/ 시장에서 경기 독일하면 7-12) 블랙박스 장치 할인 특별약관 ·······	188
7-13) 자녀(만7세이하) 할인 특별약관······	189
7-14)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7-15) 전방충돌 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	
7-16) UBI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	192
7-17) 후측방충돌 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	193
7-18) 어라운드 뷰 모니터 할인 특별약관 ·····	195
7-19) 헤드업 디스플레이 할인 특별약관 ·····	196

1. 운전자 범위 및 연령관련 특별약관

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 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 녀 계자녀
-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치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 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 」, 「대인배상 । 」, 「대문배 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5-1) 자기차량손 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의 손해
-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 상 | , 「대인배상 || , 「대물배상 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 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1-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 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 는 사실후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대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당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 상 I」、「대일배상」」、「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 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1-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 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대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 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 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1. 보상하는 손해'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① 지정 1인 운전자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보험증 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1인(이하 '지정운전자'라 하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제외 함) 으로 한정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2.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운전자 이외의 자'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1-4) 가족 및 형제 · 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 험자와 그 가족과 형제 · 자매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상합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 ④ 법률상의 호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 는 양녀, 계자녀
 -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 (2) 이 특별약관에서 형제 · 자매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부모가 동일한 기명피보험 자의 형제 · 자매 및 그 부모의 양자, 양녀로 인한 형제 · 자매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과 형제ㆍ자매 이외의 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신배상 II」, 「대代배상 II」, 「
- ②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 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 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1-5)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 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대문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

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 상 I」」「대인배상 II」「대물배상」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 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인을 확인하는데 필 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기명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 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 |」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 합니다

1-6) 임시운전자 지정일 확대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치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한정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임시운전 책임기간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임시운전 책임기간(임의기간)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지정 하는 기간(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남)을 「임의기간」이라 하여 임시운 전 책임기간으로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7) 임시운전자 실시간 확대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치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한정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임시운전 책임기간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임시운전 책임기간(임의기간)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

를 받은 시점부터,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한 마지막 날의 동일시점""까지를 「임의기간」이라 하여 임시유전 책임기간으로 합니다

단, 임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임의기간이 종료되기 전 이 특별약관에 추가 가입하는 경 우 임시운전 책임기간은 직전 임의기간 종료시점부터 마지막 날의 종료시점으로 합니다. (*1) 동일시점이란 특별약관 보험료를 받은 시각과 동일한 시각을 말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해당 특별약관 청약 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진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진을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 보통약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익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아 보통약관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의 책임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8)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치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 보 특별약관」, 중 가입한 담보에 한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 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업자**라 함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행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대리운전업자의 종사자로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일시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자
 - ② 자동차 취급업자. 다만, 이들이 피보험자동차를 위탁받아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운전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자
 -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자로서 교대운전자
- (2) 회사가 보상할 '(1)'의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업자 또는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대리운전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포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대리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110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② 기명피보험자의 가족(「1-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에서 정하는 '가족'을 말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 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① 대리유전업자의 신체에 생긴 소해
- ② 기명피보험자가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대리우전업자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우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9~1-17) 운전자연령 만 21 · 22 · 24 · 26 · 28 · 30 · 35 · 43 · 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 · 22 · 24 · 26 · 28 · 30 · 35 · 43 · 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 · 22 · 24 · 26 · 28 · 30 · 35 · 43 · 48세 미만의 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 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 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 」, 「대인배상 ! 」, 「대 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5-1) 자기 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의 손해
 - ③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 인배상 | , 「대인배상 || , 「대물배상 의 손해,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 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 · 22 · 24 · 26 · 28 · 30 · 35 · 43 · 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 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21 · 22 · 24 · 26 · 28 · 30 · 35 · 43 · 48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 상합니다

① 운전자연령 만54세 이하 한정운전 추가 특별약관

1. 적용 대상

회사는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피보 함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의 연령을 만54세 이하로 한정합니다. 이래의 조건에 해당 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1) 운전자 연령관련 「1-14) 운전자연령 만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15) 운전 자연령 만43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16) 운전자연령 만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
- (2) 운전자 범위관련 「1-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 자의 나이가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기준 만54세 이하인 경우, 단, 「1-3) 기명피 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① 지정 1인 운전자 추가특별약관」을가입하는 경 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3) 운전자 범위관련 「1-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기준 만54세 이 하인 경우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이 추가 특별약관에 의하여 54세 초과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추가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 ②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인배상 미」「대 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5-1) 자기 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손해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 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미」「대인배상 미」「대불배상」의 손해 다 만,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불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54세 초과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54세 초과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2.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2-1)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 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하는 손해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 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집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③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 」,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 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④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 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 (1) 회사는 위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 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2)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악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을 죽게 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공소 제기된 경우 피보 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형사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하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시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7호와 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피해자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 2호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수에 따라 피해자 1인당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은 실 속형, 기본형, 고급형으로 구분되며, 가입하신 상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실속형	기본형	고급형
사망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
1급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2~3급	4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4~7급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8~14급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 (3)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 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 기한 경우.

〈용어풀이〉

「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 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 동차 우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우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 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 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 (1) 신호위반, 지시위반 사고
- (2) 중앙선침범사고
- (3) 속도위반사고
- (4) 추웤방법위반사고
-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 (6) 횡단보도사고
- (7) 무면허사고
- (8) 주취/약물복용사고
- (9) 인도침범사고
- (10) 개문발차사고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 (12) 자동차 화물 고정조치 위반 사고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항, 제2 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④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을 때
-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 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②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③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④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인)서,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다만, 위 '1.보상하는 손해의 (3)'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 서 발행한 공소장
-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분담

- (1) 형사합의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방식이 적용 됩니다.
- (2) 보험금 지급방식
 -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6. 준용규정

손해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3)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 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2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 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3천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 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3항에 따 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워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항. 제2 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④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을 때
-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 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 ③ 법원의 판결문 사본
 -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 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 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분담

- (1)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방식이 적용 됩니다
- (2) 보험금 지급방식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 변호사선임비용 지원 특별약관(실손형)

1.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이하 '대인사고'라 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비용 등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단, 약 식기소 제외)
 - ②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 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 판이 청구되는 경우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약식기소**라 함은 공소제기와 더불어 「형사소송법」 제 449조 규정에 의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말합니다.
- 1.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2.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 악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악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악식명
- 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3.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2)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 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항, 제2 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싸움 또는 자살 행위로 사고를 일으킨 때
 - ③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④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⑤ 보험 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을 때
-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운전자 한정범위에 속하는 자 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1)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 ③ 법원의 판결문 사본
 - ④ 변호사보수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2)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출한 서류에 일부러 거짓을 적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위 '(1)'의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또는 '(4)'의 규 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 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분담

- (1) 변호사선임비용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 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보험금 지급방식이 적용 됩니다.
- (2) 보험금 지급방식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5)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제2절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제2절 대물배상」의 가입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가입금액으로 대체하여 드립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화 소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관련 특별약관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3.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2. 위 '1'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 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6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위 '실제손해액' 이란 보통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2. 위 '(1)'의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 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3. 위 '(1)'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 II ,에 의하여 보 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3자가 부담하여할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상」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과 '대인배생」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3)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 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4)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 주말 · 휴일확대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주말 및 휴일(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에 피보험자 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 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을 「주말·휴일사고추가보험 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 및 휴일이라 함은 다음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① 주말 : 금요일 18:00 \sim 월요일 06:00
- ②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전일 18:00 ~ 익일 06:00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 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3) 대중교통사고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승용구에 탑승중(운전 중 제외)인 상 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탑승중 교통사고'라 함)로 인하여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대중교통승용구라 함은 다음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 스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 ③ 여객수송용 기차 전철(지하철)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망한 때
 - ②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자살 또는 싸움으로 사망한 때
 - ③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 ④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 ⑤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 ⑥ 경기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 흥행 또는 흥행을 위한 연습, 훈련, 또는 시운전을 위 하여 운행중인 교통승용구를 조정하거나 탑승중 사망한 때
 - ⑦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리, 점검, 정비, 청소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때
 - ⑧ 하역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때
 - ⑨ 교통승용구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던 중 사망한 때
 - ⑩ 교통승용구에 탑승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로서 업무상 교통승용구에 탑승 하 던 중 사망한 때
- (2) 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보험금 청구권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 ④ 그 밖에 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 (3) 회사는 위 '(2)'에 정한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 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 (4)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3)'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 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 립니다.
- (5)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위 '(3)'또는 '(4)'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4) 해외 운전 중 사고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밖에서 정원 10인승 이하의 승 용치를 운전 중 생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5) 간병비지원금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124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등급에 따라 매 사고시마다 아래와 같이 간병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유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 우에 한합니다

상해등급	1급내지 3급	4급내지 6급	
인정금액	500만원	200만원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제13조(피보험자)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 별약관,의 '3. 피보험자'에서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6) 성형 및 치아보철지원금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 안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성형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부분에 성형을 요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을 한도로 1cm당 10만원을 「성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어 보철을 요하는 경우에는 1대당 10 만원의 「치아보철지원금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 우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

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7) 교통상해 입원 및 상급병실료 차액 지원금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 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다음 각 호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교통상해 입원 지원금」 및 「상급병실료 차액 지원금」 응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① 교통상해 입원 지원금: 입원 1일당 3만원을 보험기간과 상관없이 100일 한도로 매 사고시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입원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상급병실료 차액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실과 기준병실의 입원료 차액을 30일 한도로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 차보험(공제계약포함) 보통약관 규정에 따라 병실료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특실 포함) 을 말하며,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인정합니다.

2.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를 그 사용자의 업 무에 사용 중인 임직원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8) 자녀 사고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 안에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피보험자의 만18세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 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유행으로 인하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18세이하의 자녀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 고일 현재 만18세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 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1) 성장판 회복 지원금

자녀의 성장판이 손상을 입은 경우 성장판 회복 치료비용으로 100만원을, 호르몬제 주 사 비용으로 5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골절 깁스 회복 지원금

자녀가 골절로 인해 깁스 치료를 한경우 위로금 10만원을 「골절 깁스 회복 지원금 은 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깁스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 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3) 자녀 중증후유장애 위로금

자녀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중증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애를 말함)가 남은 경우에 1인당 5천만원의 자녀 중증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3)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막합니다
-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9) 스쿨존 내자녀 사고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를 가입한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대인배상 I」, 또는 「대인배상 II」의 보험금

- 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의 **만18세이하 자녀가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상급병실**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을 30일간 500 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보통약관 규정에 의하여 병실료차액이 지급되 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합니다.
- (2) 한방치료비 지원금

피보험자의 자녀가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한방치료비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2)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에 하합니다

〈 한방치료비 지원금 지급기준 〉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3급	300만원	
4급~5급	200만원	
6급~7급	100만원	
8급~9급	20만원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만18세이하의 자녀라 함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18세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제12조3항에 서 규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또는 보육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 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정 구간 윽 막한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1인실 또는 2인실 병실(특실제외)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및 제2 항,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 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부헌자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3) 기명피보험자의 자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10) 유산위험 사고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를 가입한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임신 중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음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유산위 험 사고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유산위험 상해 사고〉

상해급별	상해내용				
47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급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급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성해(비구 골절을 동반하 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0.7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 술을 시행한 상해				
3급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4급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5급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6급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급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8급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 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급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주) 상해등급 및 상해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구부에 의학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정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 중 여성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11) 여성중대사고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를 가입한 경 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 안에 발생한 다음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 체사고 (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 헌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 우에 한합니다.

(1) 화상 위로금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상을 입어 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피부손상을 입어 근 피판술, 유리피판술, 식피술 등의 시술을 요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화상 위로금 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신기준 피부손상율과 얼굴포함 피부손상율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해당 화 상 위로금 중 높은 금액 하나만을 지급합니다.

〈 화상 위로금 지급기준 〉

구분	화상으로 인한 피부 손상율				
전신기준	4.5%이하	4.5%초과 9%이하	9.0%초과 18%이하	18.0%초과 50%이하	50.0%초과
얼굴포함		4.5%이하	4.5%초과 9%이하	9.0%초과 18%이하	18.0%초과
화상 위로금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주) 화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가장 높은 피부 손상율(전신기준 50%초과 또는 얼굴포함 18%초과)을 적용합니다.

(2) 성형 위로금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에 상해를 입어 성형치료를 한 경우 중증상해 의 경우 5백만원을 일반상해의 경우 1백만원을 성형 위로금 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화상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성형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상해란 다음의 상해를 말합니다.
 - o 두부 :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크 기 이상의 손상
 - o 안면부: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선상흔, 100원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목
 - ㅇ 경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
 - ㅇ 코 :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
 - ㅇ 귀 : 귓바퀴 연골부의 1/2 이상이 결손된 경우
- (2) 이 특별약관에서 일반상해란 다음의 상해를 말합니다.
 - ㅇ 두부 :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계란크기 이상의 두개골 결손
 - o 안면부: 100원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3cm 이상의 선상흔
 - ㅇ 경부: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이 있는 경우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
 - ㅇ 코 : 코 연골부의 일부 또는 비익(鼻翼, 콧망울)을 결손한 경우
 - ㅇ 귀 : 귓바퀴 연골부의 일부가 결손된 경우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생긴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 약관)에서의 피보험자 중 여성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12) 출퇴근 사고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 손해 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출퇴근 시간 중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타차와의 충돌 또는 접촉 사고로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또는 「자기치량손해」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출퇴근 교통비 지워

출퇴근 시간 중의 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처랑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처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처량의 수리기간 동안 출퇴근 사고 교통비로 하루 2만원을 30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전부손해 포함)는 10일을 한도로하며 처량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회복 비용 지원

132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 해록 인은 경우에는 다음의 회복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사고에 따른 정신적 위로를 위한 리프레쉬 비용으로 2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퇴원 후 몸매관리 비용으로 30만원을 드립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출퇴근 시간이라 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06시부터 09시까지와 18시부터 21시까지를 말합니다.
- 단.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포함)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3) 수리처량 운반 서비스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우수 정비 업체(당사 홈페이지 게시)에 피보험자동차의 수리 를 맡긴 경우 정비업체는 20km의 범위내에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수리차량을 인 도하여 드립니다.

다만, 20km를 초과하는 경우의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요청지 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도서지역(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은 제외), 산간지역인 경우와 기타 보험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 차상해 특별약관 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 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손해에 및 가해자불명사고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4-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 외, 이하 같음) 생긴 사고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 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 인배상 II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 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3-1) 자 동차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 (3) 회사가 보상할 위 '(1)'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 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 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 만을 보상합니다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에 하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피보험자동차 와 동일한 차종(송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 \cdot 3종승합자동차, 초소형 \cdot 경 \cdot 4종화물 자동차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치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 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 한 손해
-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하 손해
-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 은 손해
-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기 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어야 피보험자로 인정

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 치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우전(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 외. 이하 같음)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 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 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 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동차의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 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와 운전 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 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피보험자동차 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 · 3종승합자동차, 초소형 · 경 · 4종화물 자동차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 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 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 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거나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하 손해
-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유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소해
- ⑥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기 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어야 피보험자로 인정 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5. 보상한도

-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는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5,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 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 비용'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 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자기차량손해담보 관련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자기처랑손해」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 우에는 싴제 수리록 워칙으로 한니다
-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 나 품질인증부품(*3)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합니다.
 - 1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소해
 -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소해
 -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인 경우,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 의 구동용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충전설비의 하자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 한 전기적 손해. 그러나 배터리의 성능 저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2)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 한 손상
- (*3)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 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 에 따릅니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 따릅니다.

6.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2)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및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다인승 1 · 2 · 3종 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 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 에 기재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5-3) (Auto Lease)중도 상환 수수료 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3년 이상 리스계약을 한 차량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출고당시의 신차가격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기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출고된 지 2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중도 상환수수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중도 상환수수료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이하의 경우 실제 발생되 금액을 하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4) 외제차 운반비용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문배상」, 「자기신체사고」(또는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치량손해 또괄담보특별약관」)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악관 「자기치량손해」 또는 「5-1) 자기치량손해 포괄 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를 위하여 기명 피보험자가 정한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 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기명피보험자가 거주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 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 (2)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차량운반비용」은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수리비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 목적 금액,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5)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을 가입한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 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 금 을 보상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

-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체교통 비용은 대체교통비용 인정기준액에 대체 교통비용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 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2) 대체교통비용 인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이 1만원, 2만원, 3만원인 경우: 각각의 1일 보험금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이 렌트비용인 경우
 - 가) 회사가 지정하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 :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통상의 요금
 - 나)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여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 :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 금의 80% 상당액
 - 다)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3만원
- (3) 대체교통비용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자동차의 부품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 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
 - ③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 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 (4)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여자동차라 함은 보험회사와 대여자동차 전 문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동급의 차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하 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 이)를 고려합니다.
- (3)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 (4)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 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 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대여자동차 자기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5-5)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을 가입하여 「5-5) 렌트 및 대체교통비용 지원금 특별약관)의 '3, 보험금의 지급 (2)의 ② 보험 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이 렌트비용인 경우'에 의하여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지정하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대여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운 전한 대여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 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액을 한도로 대여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 및 교환가 액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대여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 (2) 회사가 보상할 '(1)'의 손해에 대하여 대여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 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대여자동차의 보험계약 또 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 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치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6)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자동차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치량손해, 또는 '5-1) 자기치량손해 포괄담 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 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 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 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이라 함은 신차 취득시 소요되는 취득세 와 등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

한 번의 사고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치량손해」또는 「5-1) 자기치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 도로 지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7) 차량신가보상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출고당시 신차(최초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6 개월 이내의 차량)가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출고된 지 1년 이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통약관 「자기차량 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손해(간접손해 제외)가 보험가입금액(가입 당시 차량가액)의 70%이상인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의 '5.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8) Eco-Green 리싸이클부품 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제2항 제3호 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①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 ② 위 '①'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리싸이클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제4항 제2호 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 ①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그 교체 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위 '①'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리싸이클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리싸이클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인정한 업체로부터 다음의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자동 차를 수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 (1) 중고부품: 사이드 미러, 프론트 팬더, 본네트, 라디에이터 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판넬,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 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 덴서, 테일 램프, 헤드 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및 전·후방 센서
 - (2)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경우와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② 보험개발원이 인정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 또는 「대물배상」 대상차량을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친환경부품을 공급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새 부분품 가격과의 차액

4. 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1) ①'의 경우 기명피보험자
 - ② 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2) ②'의 경우 「대물배상」 대상차량의 소유자

5. 보험금의 환입

- (1) 보통악관 제7조(피보험자) 또는 제22조(피보험자) 또는 「5-1) 자기치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3.피보험자'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대물배 상」 또는 「자기치량손해」 또는 「5-1) 자기치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전 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을 사용하였으나 리싸이클부품의 하자 등으로 이미 사용된 친환경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6. 적용배제

보험개발원의 인정 업체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부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42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9)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 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 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이란 자동차 제 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이란 자 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3)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 을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보험증권에 기재 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4.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보험금의 확인

-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5-1) 자기차 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 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 '2, 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 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6.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회사가 OEM 부품으로 수

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 ·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10)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 중 차량손해 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기치량손해」및 「5-1) 자기치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 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대여한 대여자동차를 제주 지역 내에서 사용 · 관리 중 사고를 일으켜 대여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대여자동차의 파손으로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 상 지급기준'의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및 '4. 휴차료'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여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대여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 및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로 인정합니다.

4. 보험기간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하는 날부터 선택한 기간(첫날 0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남)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일이 지정일의 첫날인 경우 제주도에 도착하여 대여자동차를 인수받은 때 부터 시작합니다.

〈용어풀이〉

대여자동차란 피보험자가 단기간(1개월 미만)의 이용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에 의해 등록된 대여사업자를 통해 대여한 10인승이하의 승용차를 말합니다. 제주지역이란 행정구역상의 제주도 및 부속도서(해상은 제외)를 말합니다.

5.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는 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임금

144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액이 대여자동차의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대여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비용'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 상한니다

6.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 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대여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한 손해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11)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물배상' 또는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 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 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 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 대인배상॥,,「대물배상」,「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무보 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 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 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3)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위 '(1)'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차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수리가능한 경우에 는 사용하지 못하는 통상의 수리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자의 타당한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 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위 '(3)'의 영업손해의 경우 해당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 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 (5)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 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 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 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6) 위 '(1)'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치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 및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대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12)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 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파손되어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 부분 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구동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정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배터리 제외)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46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6.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6-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함.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 (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 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 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2) 위 '(1)'의 남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 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 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모바일(알림톡)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 (4) 회사가 위 '(3)'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 약자가 그 전자문서의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1)'의 납 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및 '(2)'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4 보험료의 화급

이 특별약과 '3 부항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 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 (1) 이 특별약관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 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 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 속됩니다.
-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 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이한 수해를 보신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 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 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3) 보험계약 갱신약정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함)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2회 이상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의 갱신

- (1) 회사가 약관,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이라 함)을 개정한 경우, 갱신계약은 보험계약 만료일 기준의 제도 또는 보험료 등을 적 용합니다.
- (2)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이 이 계약의 만료일과 일치하고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약정 에 따른 갱신계약으로 인정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4) 보험료 자동난인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 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록 통하여 자동이체난인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벽약 과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 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답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 및 「대물배상」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함) 로 합니다.
-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 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 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 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 (4) 지정은햇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함 경우에는 보험료 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 약정이 체일에(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 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 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 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 고를 합니다.
-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계산시 가산기간

납입방법	미납입 보험료	2회 보험료	3회 보험료	4회 보험료	5회 보험료	6회 보험료	7회 보험료	8회 보험료	9회 보험료	10회 보험료	11회 보험료
비연속	1형					1개월					
2회납	2형			1개월							

납입방법	미납입 보험료	2회 보험료	3회 보험료	4회 보험료	5회 보험료	6회 보험료	7회 보험료	8회 보험료	9회 보험료	10회 보험료	11회 보험료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연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속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납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10회납	1개월									
	11회납	1개월	1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6-5) 보험료 정산약정에 대한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회사에 기입하는 계약건수가 월평균 25건 이 상이고 그 보험료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정산약정을 맺고자 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정산

- (1)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문할보험료를 포함)와 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보험료는 보험료정산 특별약정에 따라 상호 정산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미정산되었을 때에는 정산기일의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그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3. 회사의 책임개시

보험료정산특별약정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이라도 보험 증권상의 책임개시일부터 회사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6) E-mail 안내약정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 보험계약의 보 험계약 자료를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자료**라 함은 회사가 이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등의 서류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료를 수령받을 전자우 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위 '(1)'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3) 위 '(1)'또는 '(2)'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로 보험계약자료를 교 부학으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료의 교부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료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각종 보험계약자료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편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특별약관이 자동 소멸되고 보험계약자는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7) 행복나눔 서민우대 할인 특별약관 ||

1. 가입조건

-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
-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2019, 6, 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가 아닐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 ① 가입시점에 기명피보험자 연령 만30세 이상
 - ②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 차(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1대)
 - ③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
 - ④ 기명피보험자에게 만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⑤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
 - ※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이면서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④'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2019. 6, 30.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
 - 급 장애인)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 ① 피보험자동차가 비사업용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이하 화물 채(단, 기명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1대)
 - ② 피보험자동차가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경과
 - ③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
-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 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동거가족**이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 현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합니다.

2. 가입방법

-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1. 가입조건 (1)'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2) '1, 가입조건 (2)'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장수 영수증
 -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 ⑤ 기명피보험자의 부양자녀가 명시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⑥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국민건강보험료 명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⑦ 다만,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3) '1. 가입조건 (3)'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처진수 영수증
 -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 ⑤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국민건강보험 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 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⑥ 다만,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⑦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보지카드)
 - ⑧ 다만, 장애인증명서의 경우 2년마다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⑨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4) '1. 가입조건 (4)'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서류
 -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자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부 가가치세수입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사업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인 경우 사업소득 원천장수 영수증
 -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무소득자인 경우 사실증명원
 - ⑤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

- 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 헌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 ⑥ 다만 기명피보험자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⑦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 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용어풀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하다.
-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 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 · 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 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 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 하다.
-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하인 계층을 말한다
-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 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6-8) 시니어 안전운전자 우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 (2) 이 특별약관 가입당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 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 (3) 기명피보험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인지지각 검사에 경계선(42점)군 이상으로 합격하거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지의 '운전능력검사결과표' 종합 판정이 1~3등급인 경위단,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결과지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등급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65세 이상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특약 가입 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2 가입가능 기간

피보험자의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한 교육필증에 기재된 인지지각검사 결과일로부터 보 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이 3년 이내인 경우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가입방법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약관 '제1조 (3)'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통안전교육 교육필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의 할인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기간 동안 해당 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할인율을 적용 하여 할인하여 드립니다.

5. 보험기간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개시시기			
교육필증상 인지지각검사 결과일이 보통약관 보험기 간 첫날 이전인 경우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부터, 단,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해있지 않은 경우, 부부운 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 전 특별약관으로 변경한 첫날부터,			
교육필증상 인지지각검사 결과일이 보통약관 보험기 간 첫날 이후인 경우	인지지각검사일부터, 단, 평가일 당일 부부운전자 한정운 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에 기업해있지 않은 경우, 평가일 이후 부부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 관으로 변경한 첫날부터.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합니다. 단보함기간 도중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이외의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으로 변경한 경우 변경한 효력이 발생한날의 전날 24시에 종료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9)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화 특별약과

1. 적용대상

-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 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 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 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 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 공제로 표시된 보험 · 공제의 보험료 · 공제 료를 말한다.
-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 보증 · 공제의 보험료 · 보증료 · 공제료 중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 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보증. 다만, 보 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이동 복지지 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증명서류의 제출

- (1)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 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 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 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 (1)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 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 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 환하여 드립니다.
- (2)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역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4 전화 취소

- (1)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역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2)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청 할수 없습니다.
- (3)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5.준용규정

-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 ·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7. 기타 특별약관

7-1) Readv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 길이 5.5m 및 중량 3톤 미만 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 제외)이면서, Readvoar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자동 차에 항하여 가인학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란 별도의 특수차량, 특수장비 사용 없이 긴급 견인, 긴급구난, 타이어교체 등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 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 는 서비스(이하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라 함)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 여 제공합니다.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긴급견인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가 사 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 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퓨즈교환, 전조등교환, 오일보충 등 현장조치만으로 운행이 가 능한 경우에는 자력운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치 할 수 있으며, 현장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거나, 구조 변경 또는 적재 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기능한 경 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합니다. 비상급유 서비스를 2 회 초과 요청시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잔여 이용 가능 횟수를 한도로 '긴급견 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급유를 요청하는 경 우 회사는 가까운 주유소에서 연료를 구입하여 배달하여 드리며, 이 경우 연료비용 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② LPG(엘피지) 차량은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10km의 범위 내에 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 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 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가 피보험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외제차 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나 사이드 에어백 등이 장착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일부 차량의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①'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견인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동 약관 '(1) 긴급견인서비스 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배터리충전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다만,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보험 자가 부담합니다

(5) 타이어교체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 (wheel)을 개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휠 개조 등으로 인하여 타이어교체 가 어려우 경우에는 '(1) 간급경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 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긴급구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 물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 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구난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내지 '②'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 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 ③ 외제차 또는 3.0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 ④ 세이프티로더 등 별도의 구난 장비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 ⑤ 구난 작업을 시작하여 견인 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 과한 경우

(7) 타이어 펑크수리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트레드부분(접지면)에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 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 1개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에도 북구하고 펑크 1개 부위록 초과하여 수리하는 경우 박생되는 비용은 피 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다음과 같이 펑크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 긴급 견인서비스'또는 '(5)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가,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나 Run-flat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 다 자연마모로 인한 펑크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 어진 경우
 - 라.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④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 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⑤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검사 대행업체 와 연계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대행하여 드리며, 검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9) 폐차대행서비스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구함 경우에는 폐차전문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도서(제 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 제외)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에는 Readycar 긴급출동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가능 횟 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종료합니다.

조 건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6호			
보험기간 3개월초과 1년 미만	3호			
보험기간 3개월 이하	2회			

- (주) 1.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8) 정기검사대행서비스, (9) 폐차대 행서비스'는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3. Readv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비상급유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위 이용가능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7 트약부험료의 화급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육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배터리충전서비스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4) 배터리충전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③ 작금장치해제서비스 및 배터리충전서비스 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 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4) 배터리충전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60 메리츠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 기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1)

1 적용 대상

- (1)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이 추가특별약관은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2)' 또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3)' 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2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 니다. 다만 2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⑤ 기급경인서비스 확대 추가트볔약과 (2)

1. 적용 대상

- (1)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 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이 추가특별약관은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1)' 또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3)' 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기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 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 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⑥ 기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3)

1. 적용 대상

- (1)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이 추가특별약관은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1)' 또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2)' 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6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6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7-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1) 길이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의 자동차
- (2) 처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 등의 탑재 등으로 인하여 '7–1) Readycar 긴급출동서비 스 특별약관'의 가입이 제한되는 자동채전기자동차 제외)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이라 함)를 제공합니다.

3. Readv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

-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비상급유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연료의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 한하여 5리터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 드립니다. 다 만, 5리터 초과시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하는 비상 급유는 휘발유, 경유에 한하며 5리터 초과시 피보험자가 그 실비용을 부담합니다.
 - ② LPG(엘피지)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기지동 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의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배터리충전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다만, 임시적인 조치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 ② 단 전기자동차 등 배터리충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습니다.
- (3) 잠금장치해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 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가 피보험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외제차 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나 사이드 에어백 등이 장착되 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일부 차량의 잠 금장치 해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 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①'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4) 긴급견인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가 사 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1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 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퓨즈교환 전조등교환 오일보충 등 현장조치만으로 운행이 가 능한 경우에는 자력운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치 할 수 있으며, 현장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적재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
-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이 서비스는 '견인추가형'에 가입한 자동차에 한하여 제공하여 드립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 나 도서(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 제외)또는 산간 지방인 경우에는 Readycar 긴급 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가능 횟 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종료합니다.

조 건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6회
보험기간 3개월초과 1년미만	3회
보험기간 3개월이하	2회

주) '3. Readv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 (1) 비상급유서비스'의 이용한도는 위 이용가능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7. 특약보험료의 환급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 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 (3) 잠 금장치해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이라 함에 기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타이어교체 및 평크수리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1) 타이어교체 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 (wheel)을 개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 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타이어펑크수리 서비스

필요한 경우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트레드부분(접지면)에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 1개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펑크 1개 부위를 초과하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 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다음과 같이 펑크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1) 타이어교체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가.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Run-llai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시 특수장비가
 - 다. 자연마모로 인한 펑크,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 라.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④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 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에도 북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준용 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③ 기급구난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기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 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긴급구난 서비스의 내용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 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 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 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됩니다.
- (2) 위 '(1)'에도 불구하고 구난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4) 위 '(1)' 내지 '(2)'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 ③ 외제차 또는 3.0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 ④ 세이프티로더 등 별도의 구난 장비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 ⑤ 구난 작업을 시작하여 견인 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 과한 경우

3. 준용 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④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1)

1. 적용 대상

- (1)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이라 함) '견인추가형'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이 추가특별약관은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2)' 또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3)' 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 (4) '긴 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2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2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⑤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2)

1. 적용 대상

- (1)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약관,(이하 '특별 약관'이라 회' '경인추가형'에 가입하 경우에 하하여 가입학 수 있습니다
- (2) 이 추가특별약관은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1)' 또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3)' 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 (4) '긴 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 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⑥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 (3)

1. 적용 대상

- (1) 이 추가특별악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 특별악관,(이하 '특별 악관'이라 항) '경인추가형'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이 추가특별약관은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1)' 또는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2)' 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중형 화물/승합)의 종류 및 내용 (4) '긴 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6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6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7-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전기자동차인 경우에 한하 여 가인 가능한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 용 ·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종류 및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피보험자동차가 사 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당 1회에 한하여 5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50km를 초과하 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② 전기자동차는 시동(보조)배터리 방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 여 임시적으로 시동(보조)배터리를 충전하여 드립니다. 다만, 서비스가 불가능한 차 량은 50km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 ③ 위 '①', '②'에도 불구하고 퓨즈교환, 전조등교환, 오일보충 등 현장조치만으로 운행 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력운행이 가능하도록 현장조치 할 수 있으며, 현장조치에 소 요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④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또는 중량이 견인한도를 초과하거나, 구조 변경 또는 적재 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 ⑤ 위 '①', '②'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 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작금장치해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열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석의 잠금장 치를 해제할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 다만, 서비스를 요청하는 자가 피보험자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잠금장치해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외제차 또는 특수 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나 사이드 에어백 등이 장착 되어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가 불가능한 일부 차량의 잠금장치 해 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에 잠금장치해제 전문업체 연결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때 회사는 "위 '①'의 방법으로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견인이 가능한 상 태인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동 약관 '(1) 긴급견인서비스 ①'의 서 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3) 타이어교체서비스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다만. 휠 (wheel)을 개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해당 휠을 교체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휠 개조 등으로 인하여 타이어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1)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 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긴급구난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도로의 이탈,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이 피보험자에게 청구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구난작업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내지 '②'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 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 ③ 외제차 또는 3,0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 ④ 세이프티로더 등 별도의 구난 장비를 사용하여 구난한 경우
 - ⑤ 구난 작업을 시작하여 견인 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초 과한 경우

(5) 타이어 펑크수리서비스

-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트레드부분(접지면)에 구멍이 뚫린 단순 펑크로 인하여 유행이 불가능한 경우 펑크 1개 부위에 한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펑크 1개 부위를 초과하여 수리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 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③ 다음과 같이 펑크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1) 긴급 견인서비스' 또는 '(3) 타이어교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가. 아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나. Run-flai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 다. 자연마모로 인한 펑크,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 라,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 펑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④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 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⑤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요된 비용을 피보험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검사 대행업체

와 연계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대행하여 드리며 검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7) 폐차대행서비스

회사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폐차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폐차전문 대행 업체와 연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장까지 견인하여 폐차한 후 폐차증명서를 발 급하여 드립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회사는 Readycar 긴급춬동서비스(전기자동차)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 나 도서(제주도 및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 제외)또는 산간지방인 경우에는 Readycar 긴 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접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종료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 가입 후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이용 가능 횟수를 모두 이용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종료합니다.

조 건	이용가능 횟수			
보험기간 1년	6호			
보험기간 3개월초과 1년 미만	3호			
보험기간 3개월 이하	2호			

(주)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의 종류 및 내용 (6) 정기검사대행서비스 (7) 폐차대행서비스'는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특약보험료의 화급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윸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잠금장치해제서비스제외 추가특별약관

1. 적용 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 (이하 '특별약관'이 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특별약관의 '3,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종류 및 내용 (2) 잠금장 치해제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기급견인서비스 확대 추가특별약관(전기자동차)

1. 적용 대상

(1) 이 추가특별약관은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회사는 특별약관의 '2, Readycar 긴급출동서비스(전기자동차)'의 종류 및 내용 (1) '긴급견인서비스'에 의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일당 1회에 한하여 10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된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7-4)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적용 대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다인승 1·2·3종 승용자동채(구급용 또는 일반유상용), 6인 승 이하의 승용자동채(구급용 또는 화물운송용)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화물운송용이라 함은 여객운송 목적이 아닌 화물운송 목적으로만 운행하는 처량을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랑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기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1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6인승 이하의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구급용 자동채(앰뷸런스) 또는 장애인 택시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5)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9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 제 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1호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의 '4. 보상하지 않는 손 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 보험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 , 「대물배상 ,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해당 담보 및 해당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시험용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상용화 등을 위해 주행시험용으 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6) 자동차취급업자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기명피보험자 의 요청에 의해 그 취급업무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발 생한 사고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3-1)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통약관의 보상기준을 따름)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한정운전 특별약관」및 「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위 '(1)'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보 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발생손해 가 위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 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보 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4.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이탈하여 피보험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 로 인하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를 취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를 취급하는 자 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합니다.
- ① 자동차취급업자
- ② 피보험자동차의 등록, 정비 등을 대행하도록 요청받아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7)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함)를 확인할 수 있는 정치(이하 '운행 정보 확인장치'라 함)를 장착한 경우
 - (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별표2〉에서 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다) 보험기간이 3개월이상 남은 경우
 - (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의 인위적인 변경이나 다른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 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나)'에서 정한 승용차요일제 비운행 약정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주행거리 이하 유행 약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 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 (나)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다)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비운행 약정 요일 당일에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부 및 주행거리 정보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 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 은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 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 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 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 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 1개월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 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 가 인정하는 기관의 누적운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 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 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개발원의 직전 계약 최종 주행거리 정 보를 회사에게 조회 및 활용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부터 만료 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 (보통약관 제49조(피보 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 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1)'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 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1)'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 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 항"(2)'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3)"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정산 환급 등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2)" 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 정산 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 (가)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3일 이하(단, 이 특별약관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로 함)인 경우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별표1〉의 보험료 정사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 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1)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실적이 〈별표2〉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 좌로 〈별표2〉의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 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의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2〉의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 (다) 위 (가)와 (나) 모두에 해당 될 경우 (가)와 (나) 각각의 정산금액 중 높은 금액 1가 지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 정 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보험계약자는 위 '(1)'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비운행 약정요일 운행 여부의 판단

- (1)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동차를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3)'내 지 '(4)'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 (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가
- (2)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동차를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나)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 · 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다)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 (라)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3)'내 지 '(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정 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8.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365 여가 추가 일평균 X (윤년일 경우 주행거리 운행거리 주행거리 366)

※ 일평균주행거리 = 경과주행거리 ÷경과일수

- (1) '경과주행거리'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동안에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기록된 주행거 리를 말합니다
- (2) '경과일수'는 최초 운행정보확인장치 장착일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단. 최초 운행정보확인장치 장착일이 보험시기 이전인 경우에는 보 헌시기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 (3) '추가운행거리'는 다음의 사유로 운행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행정보 확인 이 불가능한 1시간당 60km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합니다. 단. 1일 추가운행 거리는 500km를 한도로 합니다
 - (가)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 (나)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 · 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의 사유

9 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약정요일 비운행 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정산금액
비운행 약정요일 준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
	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 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 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 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별표2〉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정산금액
3,000Km0 ō }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3,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5,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5,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8,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8,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0,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구분	정산금액
12,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5,000Km0 ā}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5,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7,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7,000Km초과	0%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8)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 정보 확인장치'라 함)를 장착한 경우
 - (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별표2〉에서 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유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다) 보험기간이 3개월이상 남은 경우
- (2)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의 '(나)'에서 정한 승용차요일제 비운행 약정에 대하여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도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주행거리 이하 운행 약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가)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 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 (나)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다)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비운행 약정 요일 당일에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여부 및 주행거리 정보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 능을 갖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 은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 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 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운 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 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 하고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 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 (2)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1)'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부터 만료 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 관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부터 해지 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 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 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부터 7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1)'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5)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 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1)'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 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 (7)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추징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 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 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지한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 항"(2)'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4)'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정산 등

-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2)'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한 정산율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다만, 〈별표1〉 및 〈별표2〉 모 두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정산율 1가지만 적용하여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가)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4일이상(단,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상,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일 이상으로 함인 경우
 - (나)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에 차이가 있는 경우
- (2) 위 '(1)'에 의해 추징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 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정산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3) 위 '(1)에 의해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를 통하여 정산보험료를 송금하여 드립니다.
 - 단,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의 명 의의 은행계좌로 정산보험료를 송금하여 드립니다.
- (4) 이 특별악관 '2특별악관 계약 후 알릴의무''(1)'에서 규정한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않거 나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시항''(2)','(3)','(4)','(5)' 에서 규정한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다만, '3.의'(2)'에서 규정한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않아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전송하여 이 특별약관 약정사항의 준수를 증명한 경우 위 '(1)'에 의해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5) 이 특별약관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 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 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6)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계약 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 험료를 추징합니다.

7. 비운행 약정요일 운행 여부의 판단

- (1)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동차를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4)'내 지 '(5)'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 (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가
- (2)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피보험자동차를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한 것으로 가주합니다
 - (가)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나)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 · 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 (다)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 (라) 이 특별약관 '3. 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4)'내 지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정 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당해 기간

8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윤년일 경우 366)	+	추가 운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 경과	주행거리 ÷경과일	일수	

- (1) '경과 주행거리'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동안에 유행정보확인장치에 기록된 주행거 리를 말합니다
- (2) '경과일수'는 최초 운행정보확인장치 장착일부터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단, 최초 운행정보확인장치 장착일이 보험시기 이전인 경우에는 보 험시기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 (3) '추가운행거리'는 다음의 사유로 운행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행정보 확인 이 불가능한 1시간당 60km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합니다. 단. 1일 추가운행 거리는 500km를 한도로 합니다.
 - (가)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 (나)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 · 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의 사유

9. 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약정요일 비운행 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정산금액
비운행 약정요일 준수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 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 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 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 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별표2〉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정산금액	
3,000Km0 āŀ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구분	정산금액
3,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5,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5,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8,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8,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0,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2,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5,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5,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7,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7,000Km초과	0%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9) 주행거리 연동 할인 |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기간 동안 "〈별표〉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사금액"에서 정한 주행거리 이하로 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나)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 (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의 인위적인 변경이나 다른자동차의 운행정보 전송 등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 받으려 하였거나 할인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2) 이 특별약관은 「7-6)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I」 「7-7) 주행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II」과 함께 기업할 수 없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 45일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누적운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 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 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을 만 족해야 합니다
- (1) 화질불량이나 흔들림 없이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 상 총누적주행거리를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2) 사진의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차량번호가 보이도록 찍 은 사진 등)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 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 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 관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문하거 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보험기간 해지일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 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 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사항, (1),이 '선생이 따라 '쪼셀 전 피ధ되자온 가이 국왕 수계 소화되기 외계를 확인다 아야 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교 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5)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을 교체(수리)함 경우에는 교체(수리) 이전에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의 규정에 따라 교체(수리) 전 계기판의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하며, 계 기판을 교체(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수리) 후 주행거리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1)'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주행거리 정보의 전송을 요 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 하며, 주행거리 정보 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7)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된 보 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1)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제2조의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 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 및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정보를 피보험자 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확인받은) 경우 및 주행거리 정보 를 변경하여 송부한(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2)', '(4)' 및 '(5)'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화인받아 야) 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에 전송하지(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료의 정산 등

- (1) 회사는 이 특별악관 특약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내지 '(2)'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 하여 연간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정산금액은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정산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보험료 정산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 정 사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 거리정보가 송부된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송부 받은 경우 에는 보험기간 만료일) 또는 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최종주행거리가 확인된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주행거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 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 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 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4) 이 특별악관 '2특별악관 계약 후 알릴의무' '(1)'에서 규정한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내지 '(2)'에서 규정한 정보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3.의 '(1)'에서 규정한 확인 기일을 초과하여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 받아 이 특별약관의 약정사항의 준수를 증명한 경우에는 위'(1)'에 의해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5) 이 특별약관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2)', '(3)'에 의하여 이 특별 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연간주행거리 = 일평균주행거리 × 365(윤년일 경우 366)

- (1) 일평균주행거리 = (최종 누계 주행거리 최초 누계 주행거리) ÷ 경과일수
- (2) 경과일수 : 최초 누계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누계 주행거리 확인일까 지의 일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 리 정보를 확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정산금액
3,000Km0 ā∤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3,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5,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5,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8,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8,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0,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2,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5,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5,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7,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7,000Km초과	0%

7-10) 주행거리 연동 할인 || 특별약관

1 가인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기간 동안 (별표)에서 정한 주행거리 이 하로 유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나) 보험기간이 1년이며(동일증권 계약으로 가입하기 위해 단기계약으로 가입한 경우 제외) 보험기간 첫날부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 (2) 이 특별약관은 [7-6] 주햇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 [7-7] 주햇거리 연동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과 함께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 이전 45일부터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 가 인정하는 기관의 누적운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 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 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 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이라 함은 다음의 조건을 만 족해야 합니다.
- (1) 화질불량이나 흔들림 없이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 상 총누적주행거리를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 (2) 사진의 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증 등)와 함 께 촬영되어야 합니다.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 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 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보험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 관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주행거리 확인 대행업체를 방문하거 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보험기간 해지일의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이야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 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 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사항' '(1)'의 규정에 따라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 이야 합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교 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5)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계기판을 교체(수리)할 경우에는 교체(수리) 이전에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의 규정에 따라 교체(수리) 전 계기판의 최종 누계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받아야 하며, 계 기판을 교체(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수리) 후 주행거리 정보를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합니다.
- (6)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출동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회 사로부터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행거리 정보 확인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 (7)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선할인한 보험료의 추정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 경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 정 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1)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제2조의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1)' 및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정보를 피보험자 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확인받은) 경우 및 주행거리 정보 를 변경하여 송부해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2)'. '(4)' 및 '(5)'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확인받아 야) 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에 전송하지(확인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무효로 됩니다

5 보험료의 정산 등

- (1) 특약 가입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와 보험가입시 약정한 연간 주행거 리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정산율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가) 특약 가입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가입시 약정한 연간 주 행거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정산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나) 특약 가입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가 보험가입시 약정한 연간 주 행거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계약자가 고 지한 은행 계좌번호를 통하여 정산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2) 이 특별약관 '2.특별약관 계약 후 알릴의무' '(1)'에서 규정한 주행거리 정보를 전송하 지 않거나 '3 주행거리 정보의 확인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내 지 '(2)'에서 규정한 정보를 확인받지 않은 경우 약정한 연간 주행거리를 초과한 것으 로 간주하여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 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정합니다
 - 다만, '3.의 '(1)'에서 규정한 운행정보를 전송하지 않아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받아 이 특별약관 약정사항의 준수를 증명 한 경우 위 '(1)'에 의해 산정된 정산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 여 드립니다.
- (3) 이 특별약관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2)', '(3)'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은행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추징합니다.
- (4)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계약 자가 고지한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 험료를 추징합니다.

6. 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연간주행거리 일평균주행거리 365(윤년일 경우 366)

- (1) 일평균주행거리 = (최종 누계 주행거리 최초 누계 주행거리) ÷ 경과일수 (2) 경과일수: 최초 누계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누계 주행거리 확인일까
 - 지의 일수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제휴업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 리 정보를 확인하거나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주행거리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주행거리별 보험료 정산금액

구분	정산금액
3,000Km0 ō }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3,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5,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5,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8,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8,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0,000Km이l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0,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2,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2,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5,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5,000Km초과	적용보험료(긴급출동서비스특약 제외)를 보험증권에
~ 17,000Km이하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
17,000Km초과	0%

보험회사는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누계 주행거리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정산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산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정산 보험료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7-11) 지정대리 청구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치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치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1)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 피 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 위 '(1)'의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3-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 이하 같음)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아래 '(3)'내지 '(4)'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 니다
- (4) 위 '(1)'에도 불구하고 '(3)'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지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

습니다

[민 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 피상소인의 직계조소
 -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 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 속인이 된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1)'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 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 (2)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 (1)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②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③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 ④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 ⑤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3)'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그 밖에 보험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2) 위 '(1)'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 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의하여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2) 블랙박스 장치 할인 특별약관

1. 적용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처량용 영상기록장치(이하 '블랙박스 장치'라 함)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장치)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4, 계약의 취소', '5,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 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
 - ② 보험회사가 블랙박스 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 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블랙박스 장치의 제조사, 모델명 등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 장치 장착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블랙박스 장치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 을 때에는 반드시 사고와 관련된 영상 기록 정보를 보험회사가 요청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2, 계약 전 알릴의무'및 위 '(1)'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블랙박스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 (1) 보험회사는 '1, 적용대상 (2)'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 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시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

- 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블랙박스 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1)'및 '(2)'에 따라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1)'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3) 자녀(만7세이하)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책임개시일 기준 만 7세 이하이거나 출생전 자녀(이하 '태아' 라 함)인 경우
- (2) 부부운저자 하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 하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 한 경우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또는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2. 가입방법

-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
- 야 합니다.
-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2) 태아의 경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확인서
-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단,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계약을 통해 '1, 가입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 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4) 차선이탈 경고장치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 또는 선택장치로서 차 선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차선이탈 경고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행하는 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등, 경고음, 진동 등으로 경고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또는 차선 이탈시 핸들을 조항하여 원래의 주행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차선유지 보조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ance System 등)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6의 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배비게이션, 블랙박스 장치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와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차선이탈 경고 자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보 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중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보험회사가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치량모델 세부시항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 ② 자동차 제조업체의 선택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부속품명, 부속품 가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③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2)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 경고장치를 상시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경고등, 경고음, 진 동 등을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잔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 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당시 차선이탈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험회사가 요청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 경고장치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 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선이탈 경고장치 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계약 전 알림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 (3)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 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3)'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5) 전방충돌 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 또는 선택장치로서 전방충돌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전방충돌 방지장치라 함은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과의 거리를 감 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또는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하 는 자동 비상 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를 말합니다. 다만,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 우나 차량 출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추가적으로 장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신청한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 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회사가 전방충돌 방지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전방충돌 방지장치의 장착 여부를 보 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중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보험회사가 정하 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차량모델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
 - ② 자동차 제조업체의 선택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부속품명, 부속품 가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③ 전방충돌 방지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2)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 방지장치를 상시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전방충돌 방지장치의 경고등, 경고음, 진 동 등을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방지 장치를 교체할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1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 방지장치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1. 가입대상 (2)'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 우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하여 전방충돌 방지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 (3)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 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3)'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6) UBI 안전운전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 (1)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에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 을 설치하여 사용하 는 경우
 - ②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에 안전운전점수"객(이하 "점수"라 합니다)가 회사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단말기가 아니거나 본인의 점수가 아닌 경우
 - ②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재(이하 "계약자 등"이라고 합니다)가 특별약관의 무 효, 해지, 취소, 철회 등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 는 경우
 - ③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안전운전프로그램 회사 간의 제휴사업 계약에 따른 것으로 서, 해당 제휴사업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점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용어풀이〉

- (*1)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이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 련 프로그램으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을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란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작동하고 2,000km이상 주행하여 산정된 점수를 말합니다. 단. 점수 확인일 이전 6개월 이내에 500km 이상 주행한 경우에 한합니다.

2. 보험료의 할인

계약자 등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시점에 기명피보험자의 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 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계약자 등은 특별약관 가입 시 점수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른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약관의 가입 및 적용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 (1) 회사가 확인한 점수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 가 아닌 경우 또는 기 명피보험자 본인의 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 (2) 위 '(1)'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계약자 등은 '2. 보험료의 할인'에 의해 할인 받은 보 험료를 즉시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2)'에 따라 계약자 등 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7) 후측방충돌 방지장치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 또는 선택장치로서 후측방충돌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후측방충돌 방지장치라 함은 자동차 운행시 차량에 장착된 레이 더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후측방 영역을 감지하며 운전자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후 측방충돌 경고장치(BSD. Blind Spot Detection) 또는 위험이 감지되면 운전자에게 정 보를 알려주며 충돌 위험시 차체를 제동하여 충돌 회피를 도와주는 후측방충돌방 지보조장치(BCA, Blind-Spot Collision-Avoidance Detection)를 말합니다. 다만, 차 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 나 차량 출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추가적으로 장착한 경우는 해 당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신청한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회사가 후측방충돌 방지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 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 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후측방충돌 방지장치의 장착 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중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치량모델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 ② 자동차 제조업체의 선택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부속품명, 부속품 가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③ 후측방충돌 방지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2)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후측방충돌 방지장치를 상시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후측방충돌 방지장치의 경고등, 경고 음. 진동 등을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후측방충돌방지 장치를 교체할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1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후촉방충돌 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1, 가입대상 (2)'의 가입제한 시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후측방충돌 방지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 (3)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 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3)'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8) 어라운드 뷰 모니터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 또는 선택장치로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 함은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변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 에게 제공하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AVM: Around View Monitor)를 말합니다 ('서라운 드 뷰 모니터' 또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어라운드 뷰 모니터'와 같이 차량에 장 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차량 주변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차 안의 모니터 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를 포함합니다.) 단,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최초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어라운드 뷰 모니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신청한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 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회사가 어라운드 뷰 모니터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어라운드 뷰 모니터의 장착 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중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차량모델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 ② 자동차 제조업체의 선택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부속품명, 부속품 가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③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2)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상시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음 등에도 불구하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의 경고등 경고음 진동 등을 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교체할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1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1. 가입대상 (2)'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악리 경우 이 특벽약과은 무효가 된니다
- (3)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 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3)'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9) 헤드업 디스플레이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 또는 선택장치로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 Up Display, HUD)라 함은 피보험자동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속도, 주행경로 안내 등 운행관련 정보를 표시하여 운전자가 시선을 전방에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다만, 차량용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차량 출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추가적으로 장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신청한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 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회사가 헤드업디스플레이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 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 실이 있는 경우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헤드업디스플레이의 장착 여부를 보 험회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중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보험회사가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자동차 제조업체의 표준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차량모델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 ② 자동차 제조업체의 선택장치로서 장착된 경우 부속품명, 부속품 가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③ 헤드업디스플레이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 (2) 갱신계약 등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1)'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헤드업디스플레이를 상시 작동시켜야 하며 우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위한 영상 등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헤드업디스플레이를 교 체할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1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헤드업디스플레이가 정 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1 가입대상 (2)'의 가입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 우 보험회사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하여 헤드업디스플레이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2.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 (3) 이 특별약관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 입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위 '(3)'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